#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173

제출년월일: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된 공간 확보 및 운영을 위해 기존 사무형 위탁에서 시설형 위탁으로 전환이 필요함
- 나.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아동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활성화와 그룹홈 간 협력·연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그룹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「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○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

○ 위탁유형 : 시설형 위탁

○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, 커뮤니티시설동

210호(한강로2가, 용산 베르디움프렌즈)

○ 규 모 : 193.1 m²(운영사무실, 회의실)

○ 위 탁 금 : 총 387백만원 (2023년)

#### 나. 위탁내용

- 위탁사무
  -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
  - 그룹홈 아동 입소, 퇴소, 상담, 조사,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
  -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·지원업무
  -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
  -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
  -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
  - 그룹홈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
  -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업무
  - 기타 시책 추진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
- 위탁기간 : 3년(2023.12.1.~2026.11.30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  - '23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(운영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(수탁기관 선정)
- 민간위탁의 필요성
  - 아동그룹홈 운영 컨설팅, 운영 상담 등을 통한 운영지원 및 지역 자원연계를 통한 그룹홈 기능 강화, 개별 아동그룹홈 간의 협력 시스템 마련으로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필요

- 지역자원과 아동그룹홈과의 연계 및 활용 체계 구축 등 전문 분야에 해당 되는 바, 우수한 법인·단체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의 질적·양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#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아동복지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   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서울특별시 이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(위탁의 운영)
    -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아동그룹홈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전문단체 중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2023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정태영(☎ 2133-5185)